

6. 소득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39호 1998. 8. 1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의 범위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보험료 및 신탁부금으로 정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 신탁
3.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

신탁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 처리준칙

제71조제2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제3호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제81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7항 후단중 “한국은행법 제36조”를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한다.

제4조 본문, 제5조 본문, 제7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 본문, 제16조의2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전단, 제33조제1항·제3항,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4항, 제46조제1항 본문·제3항, 제47조 전단, 제48조 본문, 제49조 본문,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3 본문, 제54조의3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8조제1항 본문, 제64조 본문, 제65조제4항 본문, 제65조의2, 제67조, 제70조제2항 본문, 제72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74조 전단, 제76조제2항 본문, 제78조제3항 본문, 제79조제1항 본문·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제94조의2 제3항, 제96조의2 본문, 제97조 본문, 제99조 및 제99조의2제1항·제2항·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희보